

初·中等學校의 法教育 프로그램 開發 方案 模索

李相旭* · 金大泳**

I. 問題의 提起

'사회가 있으면 법이 있다'(Ubi societas ibi ius)는 법언처럼, 법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 생활의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각 개인은 끊임없이 법과 접촉하며 살고 있다¹⁾.

올바른 社會認識에 기초를 두고 바람직한 시민적 자질을 육성하려는 교과가 사회과²⁾라면, 사회과에는 법을 통한 사회인식 교육, 즉 法教育 (Law- Related Education)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법교육은 미국에서 1960년대부터 조성되었으며, 1970년대 이후 워터 게이트 사건 등을 계기로 국민적 관심과 각급학교에서의 구체적인 실천을 모색하게 되었다³⁾.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법교육은 1946년에 미국의 사회과가 도입된 후 政治教育의 일부분으로 실시되어 왔을 뿐이므로 진정

*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법학박사.

** 영남대학교 강사

- 1) Gross, Richard E., et al., *Social Studies for Our Times*, New York: John Wiley & Sons, 1978, p.353.
- 2) 권오정, "한국 사회과 수업의 구성논리와 개혁 운동의 한계", 강우철 편, 달라져야 할 사회과 교육, 서울: 교학사, 1991, 85면.
- 3) 최인화, 사회과 법교육의 원리와 교수전략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1989, 21면.

한 의미의 법교육은 아직 정립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⁴⁾.

현대사회에서는 법교육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사실 犯罪의 계속적인 증가, 청소년을 비롯한 일반인들의 법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광범위하고 불법적인 약물의 전파 및 司法制度에 대한 시민들의 무지는 법교육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켜야 하는 몇 가지 이유에 지나지 않는다⁵⁾. 특히 최근에 와서 날이 갈수록 青少年犯罪가 증가하고 있고⁶⁾, 犯罪年齡이 낮아지는 경향⁷⁾이 있으므로, 교육의 初期段階에서 법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책임있는 시민적 자질을 기르도록 할 필요성이 커진다⁸⁾.

이와 같이 法教育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에서 초·중등 사회과의 법교육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 보면, 법의식 혹은 법태도에 관하여 조사·연구한 것⁹⁾, 중등학교에서의 법률교육(Legal Education)¹⁰⁾

4) 허종열, “한국사회과교육에서의 법교육 정립 시론”, 사회과교육, 제24호, 한국사회과교육 연구회, 1991, 129면.

5) Jarolimek, John, Social Studies in Elementary Education,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990, P.186.

6) 지난 30년간 전체 소년범은 1966년 38,187명에서 1995년 124,244명으로 약 3.3배 증가하였고 인구비(소년인구 10,000명당 범죄인구)도 82.1에서 193.8로 약 2.4배 증가하였다(법무연수원, 범죄백서, 1996, 477면).

7) 14-15세 소년의 경우 지난 30년간 강도범은 23.6배, 강간범은 11.3배, 폭력범은 16.4 배 증가하는 등 14-15세 소년을 중심으로 소년범의 저연령화 현상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14-15세 소년 형법범은 1966년 4,197명에서 1995년 25,650명으로 지난 30년간 약 6.1배 증가하였고 16-17세 소년 형법범도 1966년 9,844명에서 1995년 30,890 명으로 지난 30년간 약 3.1배 증가하였다. 반면에 18-19세 소년 형법범은 1966년 18,250명에서 1995년 26,954명으로 지난 30년간 약 48% 증가에 그쳤다(법무연수원, 상계서, 479면).

8) Cross, Alice, Program Design for Developing Law Awareness in Primary Grade Children, Nova University, 1983, pp.27-29. ED 241 178.

9) 석사학위논문으로, 김성진, 초·중고생의 법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1973; 조명형, 국민학교 아동의 법의식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1981; 정태열, 중·고등학생의 법의식에 관한 실증적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1984; 김국진, 고교생의 준법태도에 관한 조사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1987; 배종완, 고등학교 학생의 법의식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1990; 박성혁, 초·중·고생의 법태도 발달과 법교육 개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2; 문영기, 가정환경이 여고생의 법의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1997 등이 있다.

또는 법교육(Law-Related Education)에 관한 연구¹¹⁾가 많고, 초·중등 수준에서 개발된 법교육 프로그램이나 이에 관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은 법교육이 발달한 미국과 비교해 볼 때 우리 나라 법교육의 현위치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미국의 법교육 프로그램은 Gross가 ‘法教育 프로그램의 증가는 가히 劇的이다’¹²⁾라고 표현할 정도이며, 초등학생을 위한 프로그램도 많이 開發되어 있다¹³⁾. 그리고 법교육 프로그램의 펼

- 10) 석사학위논문으로, 김선태, 교과서를 통하여 본 고교 법제교육의 변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1969; 김익체, 고등학교 일반사회과 교육과정에 있어서의 법률교육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1970; 김철용, 고등학교 사회과와 법률교육,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1983; 정기오, 중등학교 법률교육에 관한 연구-수업모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대학원, 1983; 최대경, 고등학교 법률교육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1987; 장성일, 고등학교 사회과 법학습 내용의 변천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1988; 변현숙, 사회교육에 있어서 민주적 인간상-법률교육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1990; 이상춘,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의 새로운 방향모색-법률교육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대학원, 1992 등이 있다.
- 11) 법교육에 관한 논문은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에서 많이 발표되었으며, 그 중 박사학위논문은 최인화, 법교육과정의 적정성 탐색, 1992이 있고, 1992년에 발표된 석사학위 논문으로 이승국, 비판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법교육의 내용구성; 김병수, 시민교육으로서의 사법교육 강화의 필요성; 김인태, 중학교 사회과에서의 사회법교육; 송우영, 중학교 사회과 현법교육에 관한 연구; 양춘성, 중학교 법교육의 수업 Model에 관한 연구; 윤항, 중학교 사회과 법교육의 목표정립과 교과내용의 적정성 분석; 임희창, 고등학교 학생의 법교육에 관한 연구; 주영곤, 초·중·고등학교 법교육의 구조적 단계에 관한 연구가 있으며, 전만배, 중학교 사회과 환경관련법 교육, 1997 등이 있다. 그밖에 각종 논문집에 발표된 연구물로는, 조수복, “정치적 민주화와 중학교에서의 법교육”, 사회와 교육, 제13집, 한국사회과교육학회, 1989; 최인화, “중학교 사회과 법교육의 진단과 그 시사점”, 사회과교육, 제24호, 한국사회과교육연구회, 1991; 박성혁,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법교육 내용 변천에 관한 연구: 사법영역을 중심으로”, 사회와 교육, 제18집, 1994 등이 있다.
- 12) Gross, Norman, "Law-Related Education: Current Trends, Future Directions". Peabody Journal of Education, October, 1977; Fraser, Barry J. and David L. Smith, "Assessment of Law-Related Attitudes", Social Education, May, 1980, p.406에서 채인용.
- 13) 미국에서 법교육 프로그램은 1980년대에 주로 많이 개발되었는데 이 때 개발된 초등학교 프로그램과 프로그램개발 관련자료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① Bass, Martha, et al., TIPS: Crime Resistance Strategies, K-8, Albemarle County Schools, Charlottesville, Va., 1979. ED 204 224 - 204 229. ②

요성과 효과적인 운영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사회과 교육학자들도 많다¹⁴⁾.

법교육은 법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주장된 것이다. 그 동안 실시된 법의식 조사에 의하면, 한국인은 준법정신과 권리의식이 약하고 법의 생활화가 철저하지 못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였으며¹⁵⁾, 1991년에 한국법 제연구원에서 실시한 국민법의식조사는 법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권리의식이 신장된 반면 준법정신의 부재현상이 두드러지며, 법정립 및 법집행기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심화되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¹⁶⁾. 우리 나라 전체의 준법수준은 1988년에 29.4%가 법을 지킨다고 하였으나, 1991년에는 26.4%만 법을 지킨다고 하여 그 수준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

Nelson, Murry, Justice Education Teaching Strategies(JETS), K-6, Pennsylvania State Dept. of Education, 1980. ED 199 156 - 199 161. ③ Naylor, David T., et al., Rules, Rules, Rules. A Law-Related Instructional Unit for Children in Grades 2 and 3, Ohio State Bar Association, 1980. ED 200 503. ④ Naylor, David T., et al., Responsibility and You. A Law-Related Instructional Unit for Children in Grades 2 and 3, Ohio State Bar Association, 1980. ED 200 504. ⑤ Utah State Office of Education, Lesson Plans in Law-related Education, 1980. ED 194 425. ⑥ North Carolina State Dept. of Public Instruction, Lessons In Law For Middle Grades: Grade Four, 1988. ED 305 318. ⑦ Lengel, James G., et al., Vermont Elementary Law-related Education Guide, Vermont State Dept. of Education, 1981. ED 211 396. ⑧ Alabama Administrative Office of Courts, Law: The Language of Liberty. Supplemental Materials for Alabama Social Studies Teachers Grades K-1, 2-3, 4, 5-6, 1981. ED 255 443 - 255 446. ⑨ Seminole County Board of Public Instruction, Justice: Family Law. Curriculum Guide. Grades Kindergarten-Three, 1988. ED 327 460.

14) Jarolimek, John, op. cit., pp.187-188; Nelson, Murry R., Children and Social Studies, Florida: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1987, p.292; Armstrong, David G., Social Studies in Secondary Education,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Inc., 1980, pp.297-299; Banks, James A., Teaching Strategies for the Social Studies: Inquiry, Valuing, and Decision-Making, Massachusetts: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1977, pp.357-360.

15) 박상철, 한국인의 법의식, 사법행정, 제377호, 1992.5, 5면.

16) 상계논문, 7면.

으며¹⁷⁾, LG애드가 전국의 소비자 6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문민정부 이후 국민의 의식변화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본다'는 항목에 대하여 72%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¹⁸⁾.

우리 나라 초등학생의 法意識에도 전근대적인 법의식과 근대적인 법의식이 함께 重疊되어 있고¹⁹⁾, 법에 대한 낮은 흥미감과 신뢰감으로 인하여 학년수준이 올라갈수록 법에 대한 無力感과 忌避性向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한다²⁰⁾. 따라서 초등학교 수준에서부터 다양한 법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청된다는 의견²¹⁾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法教育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법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법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야 법교육이 계속적,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고 그 결과로서 법의식 및 준법태도의 제고와 함께 민주시민적 자질도 길러질 수 있을 것이다.

본研究는 법교육이 사회과에서 가지는 의의 및 방법에 대하여 고찰하고, 초·중등학교의 법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안을 模索하는데 그目的이 있다.

II. 法教育의 意義와 方法

1. 法教育의 意義

法教育은 두 가지로 정의된다. 그 하나는 미국에서 1978년에 제정된

17)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1996, 393면.

18) 영남일보, 1993. 9. 18, 7면.

19) 조명형, 국민학교 아동의 법의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1981, 50면.

20) 박성혁, 초·중·고생의 법태도 발달과 법교육 개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1992, 57면.

21) 김영현, 초·중등학교에 있어서 법교육의 실태와 개선방향,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1988, 54, 64, 67면; 박성혁, 전개논문, 59면.

法教育法(Law-Related Education Act)에 따라 ‘일반 국민들에게 法과 法節次, 法體系 및 이런 것들의 기초가 되는 기본원리와 가치에 따르는 지식과 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교육’이라고 정의한다²²⁾

법교육에 대한 또다른 정의는 法教育 研究團體(Study Group on Law-Related Education)가 1978년에 聯邦政府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법교육의 주요 지도자들이 그들의 분야에 대해 기술할 때에 정의한 것으로서 ‘현대의 복잡하고 가변적인 사회에서 法과 法的 問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이해, 기능, 태도, 평가를 개발할 기회를 교사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學習經驗의 組織’이라고 한 것이다²³⁾

법교육의 발생년도는 1962년이다. 그 해 여름 NCSS(National Council for the Social Studies)와 CLEF(Civil Liberties Education Foundation)의 후원을 받은 Williamstown 연수회에 참가한 소수의 중등교사와 사회과학자들은 Education: That Security and Liberty May Prosper Together(A Program for Improving Bill of Rights Teaching in Schools)라는 보고서에서 權利章典 분야의 교육은 自由, 正義, 平等의 기본적 개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많은 유용한 전략 중에서 事例研究法이 제일 강조되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²⁴⁾. 이와 같이

-
- 22) Bruno, Donna Kay, et al., Law-related Education in Portland: A Teacher Resource, Portland Public Schools, 1980, p.3. ED 201 584; McKinney-Browning, Mabel C., "Education Youth for Citizenship", in R. Maslow and Kirchgaessner (ed.), Law-Related Education, Association of Teachers of Social Studies/Social Science Education, 1982, p.8. ED 295 887.
 - 23) Pereira, Carolyn, Law-related Education i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ERIC Clearinghouse for Social Studies/Social Science Education, 1988, p.3. ED 296 948; Arbetman, Lee, Developing Law Related Education: Awareness Manual, Law- Related Education National Training and Dissemination Program, 1989, p.3. ED 312 194.
 - 24) Starr, Isidore, "The Law Studies Movement: A Brief Commentary on Its History and Rationale", in R. Maslow and R. Kirchgaessner (eds.), Law-related Education, Association of Teachers of Social Studies of the

법교육 운동은 미국에서 權利章典과 憲法教育을 중심으로 일어난 것이다.

법교육은 시민적 자질의 향상, 법적 기능의 습득, 법의 분야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과학 지식의 획득을 포함하고 있으며, 모든 사람들의 생활에서 법이 차지하는 중요한 役割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는데 관심을 두고 있다. 법교육은 소수의 어린 법률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법 속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기능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의 법을 이해하는 것은 讀·書·算과 마찬가지로 모든 면에서 중요한 구실을 한다²⁵⁾.

법교육은 전통적인 시민교육과는 다르다. 사회과에 대한 학문적 접근과 비교해 볼 때, 법교육은 眞理와 理解를 구하려 하기 보다는 민주사회에서 법의 역할을 保存하고 더 정당하게 하려는데 노력을 기울인다. 법교육에서 가장 강조할 수 있는 점은 학습활동 속에 학생들이 많이 참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役割놀이, 시뮬레이션, 觀察과 같은 教授戰略의 사용과 사례연구같은 자료들의 활용을 통하여 엿볼 수 있다²⁶⁾.

법교육은 살아있는 내용과 활동으로 시민교육을 전통적인 教科書的接近法으로부터 구제하고 있다. '활기없는' 지식을 '활기있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법교육은 사회과에서 그 重要性이 점점 커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75년에는 11개 주에서 사회과 교육과정에 법교육을 다루고 있었으나 1985년에는 37개 주에서 다루고 있으며, 주제의 중요성에서 차지하는 順位도 1975년에는 11위였으나 1985년에는 4위가 되었다²⁷⁾. '법이 없이 사회과를 가르치려는 것은 마치 등뼈없이 척추동물

United Federation of Teachers, 1989, p.5. ED 314 340.

25) Nelson, Murry R., Children and Social Studies, Florida: Harcourt Brase Jovanovich, Inc., 1987, pp.287-288.

26) Canipe, Sharon W., The Law-Focused Education Movement, Duke University, 1978, P.15. ED 221 422.

27) Hahn, Carole L., "The Status of the Social Studies in the Public Schools of the United States: Another Look", Social Education, March, 1985, pp.220-221.

의 解剖를 가르치려는 것과 같다.'고 한 하버드대 교수 Hocking의 지적²⁸⁾에서도 基本的 市民教育에 필수요소를 이루는 법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초등학교 때부터 체계적으로 법교육을 받은 어린이는, 법이란 인간의 활동을 制限하기만 하고, 벌을 주고, 변하지 않는, 사람의 統制와 理解를 넘어서 존재하는 것으로 認識하는 데서 점차적으로 우리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助長하며, 이해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다고 인식을 전환하게 된다. 또, 사람들이 법과 다른 행정기관 앞에 無力하다고 인식하는 관점으로부터, 사회질서를 統制하고 사회질서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즉 법적 문제와 법체계를 모르고 있다가 점차적으로 法과 法體系, 그리고 법과 관련된 문제를 알게 되며, 自我中心, 자기중심적이며 타인에게 무관심하던 태도가 동정적이고, 사회적으로 책임을 지며 타인의 문제를 숙고할 수 있는 태도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²⁹⁾.

2. 法教育의 方法

법교육이 사회과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로서 Pereira는 시민적 자질의 육성, 청소년 비행예방, 사회과에서의 학생의 흥미 증가, 사회과에서의 폭넓고 깊이있는 교육의 제공을 들고 있으나³⁰⁾, 아래에서는 Arbetman의 주장에 따라 (1) 知識의 개발 (2) 批判的 思考機能과 參與機能의 개발 (3) 肯定的인 態度의 개발 (4) 青少非行의 예방으로 구분하여 정리하고자 한다.³¹⁾

28) Starr, Isidore, op. cit., p.6.

29) Anderson, Charlotte C., "Promoting Responsible Citizenship Through Elementary Law-Related Education", Social Education, May, 1980, p.384.

30) Pereira, Carolyn, op. cit., p.3.

31) Arbetman, Lee, op. cit., pp.3-4.

1) 知識의 開發

법관련 사실과 개념에 관한 지식은 우리 나라의 역사, 정부, 그리고 경제를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法源, 법의 機能, 法節次, 법의 役割, 법의 原理(예컨대, 正義, 平等, 權威, 自由, 秩序 등)는 사회과 교육과정에 필수적인 요소들이다. 법교육은 立憲民主主義에서 정부, 사법제도 그리고 시민의 權利와 責任에 관한 학생들의 지식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증가시킨다³²⁾.

2) 批判的 思考機能과 參與機能의 開發

법교육은 批判的 思考機能의 획득에 공헌한다. 이 기능은 상대방의 진술과 주장을 주의깊게 분석하는데 요구되는 기능이며, 민주주의적인 정부 체제에서 책임있고 효과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발전시켜야 할 質問戰略이다. 법교육은 학생들이 公的·私的 문제와 관련하여 받아들이는 정보에 대하여 목적적이고, 건설적이며 의문적인 태도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법교육은 시민적 參與와 意思決定의 기능을 발전시키는데 공헌한다. 학생들이 법관련 교육에 활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그들은 문제점을 檢討하고, 개념을 분명하고 간결하게 전달하며, 討議를 하고 다른 사람의 견해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학생들은 個人的·集團的 決定을 할 수 있고 다른 중요한 사회적·정치적 價值와 關心 속에서 그러한 결정들을 평가할 수 있게 된다³³⁾.

3) 肯定的인 態度의 開發

책임있는 市民的 資質은 법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향상될 수 있다. 법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은 학생들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다양한相互作用的인 교수방법들(예컨대, 小集團活動, 模擬裁判, 시뮬레이션, 事例

32) Ibid., p.3.

33) Ibid., p.4.

研究)은 학생들을 학습과정에 긍정적으로 참가시킨다. 법관련 교육자들은 학생들이 ‘법교육이 有用하고 素美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교실에서의 상호작용이 가치가 있고, 다른 과정에서 主題를 다루는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성공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보고하고 있다³⁴⁾. 법교육 프로그램에서 고양된 학생들의 素美와 긍정적인 태도는 사회과의 다른 과정에도 轉移될 수 있을 것이다³⁵⁾.

4) 青少年非行의豫防

Social Science Education Consortium과 Center for Action Research에 의해 수행된 연구는 법교육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履行하면 非行의인 행동을 감소시키고 책임있는 시민적 자질과 관련된 일련의 態度를 향상시킨다고 지적하고 있다³⁶⁾. 이 연구는 법교육 프로그램에 성공적인 학생들은 비행 동료들과 어울리는 경향이 적고, 葛藤解消의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자제하며, 犯罪行動을回避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³⁷⁾.

法教育을 社會科 教育課程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는 세 가지를 들 수 있다³⁸⁾.

첫째, 법과 관련된 특별한 行事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法의 날’과 같

34) Hunter, Robert M., "Law-Related Educational Practice and Delinquency Theory",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Education*, Autumn, 1987: 52-64; Arbetman, Lee, op. cit., p.4에서 재인용.

35) Arbetman, Lee, op. cit., p.4.

36) Little, Judith Warren and Frances Haley, *Implementing Effective LRE Programs*, ERIC Clearinghouse for Social Studies/Social Science Education, 1982, p.1. ED 233 928.

37) Arbetman, Lee, op. cit., p.4.

38) Naylor, David T., *Incorporating Law-Related Education into Curriculum: Approaches, Issues, and Concerns*, Paper Presented at the American Bar Association's Youth Education for Citizenship Annual Leadership Conference, November, 1984; Pereira, op. cit., pp.3-4에서 재인용.

은 특별한 행사들은 법교육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하고, 특별한 법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기회를 해마다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교사들은 학급 혹은 학교단위의 활동에 法律家들이 참가하도록 초대할 수 있다. 다른 행사는 模擬裁判 競進大會, 法廷訪問, 법에 관한 논설문 쓰기 대회 등을 생각할 수 있다³⁹⁾.

둘째, 법교육에 관한 特別單元이나 과정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다. 법교육에 관한 특별단원이나 과정은 흔히 中等學校 教育課程에 포함된다. 또한 법교육과정과 시민교육과정들은 많은 학교에서 選擇科目으로 제공된다. 법에 관한 독립단원은 초등학교의 교육과정에서도 다양한 수준으로 제공될 수 있다⁴⁰⁾.

세째, 다양한 일반 教育課程에 법교육을 통합하는 방법이다. 사회과 교육과정에 법교육을 融合시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방법이다. 국사, 세계사, 정부에 관한 교육과정은 법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융합시키기 위한 교과목으로 적절하다. 법교육에 관한 한 학기의 과정은 知識, 機能, 態度에서 확실한 차이를 보여줄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법관련 교육자들은 체계적인 융합이 더 좋은 접근법이라고 보고 있다. 그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조심스럽게 통합된 법교육의 요소들이 教授의 量과 質이라는 점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고 있다⁴¹⁾.

III. 法教育 프로그램의 開發 模型

1. 法教育 프로그램의 意義

프로그램이란 학생들의 여러 능력과 요구를 有目的的이며 일관적이고

39) Pereira, Carolyn, op. cit., pp.3-4.

40) Ibid., p.4.

41) Ibid., p.4.

정기적인 활동내역으로 하여, 시간적 순서와 장소, 내용, 방법, 대상자 등의 범주에 따라 체계적으로 나열한 具體的 計劃이나, 그 중 어떤 하나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순서대로 나타낸 段階的 活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⁴²⁾.

그러므로 法教育 프로그램(Law-Related Education Program)은 법 교육에 관한 구체적 계획 또는 단계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법교육 프로그램은 教育課程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법교육 프로그램이 많이施行되고 있는 미국에서는 Law-Related Education Curriculum, Law-Related Education Lessons라는 용어가 법교육 프로그램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법교육 프로그램은 1970년대에 미국에서 크게 증가하였다. 그 이유로서는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법에 대한 경시 풍조가 정부의 최고위층에까지 스며들었고, 그 결과로서 국가의 社會·法的인 안정성이 위협을 받는다는 두려움과, 젊은이들의 태도에서 法과 法制度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결여되었고, 犯罪를 범하는 경향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치유하기 위해 학교의 책임을 강조하게 되었고, 여기에 부응하여 教育者, 司法機關, 政府機關들이 전국의 학교에서 법관련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지역적, 국가적 노력을 하게 되었다. 법교육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구성되었다. 즉, 契約의 성질, 소년의 權利, 심대가 逮捕되었을 때 해야 할 일 등 실제적인 법률정보에 초점을 맞추어 구성된 것과, 正義, 所有權, 判例와 같은 법의 기본개념을 중심으로 하여 좀 더 개념적인 접근에 중점을 두어 구성된 것이다⁴³⁾.

법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우리의 법제도에 좀더 효과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획득하는 것을 도와 준다. 법교육 프로그램

42) 권이종·강윤중, "한국교원대학교 생활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모형 개발", 교수논총, 제4집1호, 한국교원대학교, 1988, 11면.

43) Rosenzweig, Linda W.(ed.), Developmental Perspectives on the Social Studies, National Council for the Social Studies, 1982, p.82.

의 주요한 목표는 학생들이 우리 사회에서 최대한의 法的 權利를 획득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능, 그리고 태도를 발전시키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또한 法體系가 가장 효과적이고公正하게 작용하도록 하기 위해 모든 시민이 다해야 할 責任에도 주의를 기울인다. 법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들은 우리의 법적 이상과 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矛盾된 문제를 검토하고, 이상과 현실 사이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고찰할 수 있으며, 기본적인 법적 권리를 강화하고 保護와 保障을 포함하고 있는 법체계에 대하여 알 수 있다⁴⁴⁾.

미국의 경우, '法教育에 관한 플로리다 規則(The Florida Statute on Law Education)'에 의하면 법교육 프로그램은 각 區의 교육위원회 혹은 학교 위원회의 의장이, 區諮詢委員會, 혹은 학교자문위원회나 법교육이나 州刑事裁判制度 및 청소년재판제도에 관심을 가진 기관과 조직의 도움을 받아 개발하고, 州教育委員會가 채택한 규칙에 따라서 교육위원(Commissioner of Education)이 플로리다 변호사협회와 다른 적절한 조직·기관과 협동하여 執行한다. 초급학년(elementary grades)에서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지도하기 위한 계획안에는 優先權이 주어진다⁴⁵⁾고 규정하고 있다.

법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이러한 규정과 지원책은 앞으로 우리 나라에서도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2. 法教育 프로그램의 開發 模型

法教育의 목적 달성에 가장 효율적이고 타당한 내용을 추출하여 그것을 選定하고 組織하는 일이 법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법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法教育 프로그램 개발

44) Banks, James A., op. cit., pp.358-3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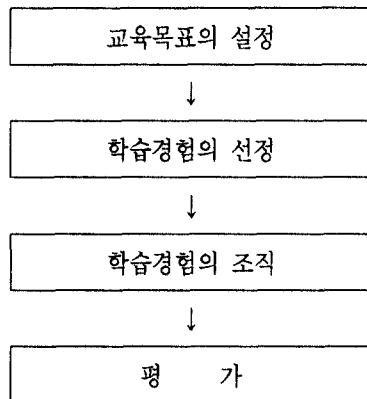
45) Seminole County Board of Public Instruction, op. cit., p.3.

모형을 결정하여야 한다.

교육과정의 개발이나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모형으로는 Tyler의 모형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Tyler는 교육프로그램의 基本的 模型을 제시한 사람으로 그의 모형은 지금까지 모든 교육모형을 開發함에 있어 연구의 근원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모형을 결정하기 위해 먼저 그의 모형을 檢討할 필요가 있다.

Tyler는 ‘教育課程과 授業의 기초원리(Basic Principles of Curriculum and Instruction)’에서 교육과정의 구성은 <그림 1>과 같은 4단계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하였다⁴⁶⁾.

<그림 1> Tyler의 교육과정 구성모형



教育目標는 사회에 대한 연구, 학습자에 대한 연구, 그리고 교과목에 대한 연구에 의해 잠정적으로 설정되며, 다시 그것은 哲學的, 心理學的 측면의 검증을 거쳐서 확정된다. Tyler의 모형에서는 교육목표의 설정이 가장 중요한 단계인데, 이는 교육목표가 教育課程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교육의 내용을 결정해 주며 아울러 교육과정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準據

46) 이해명, 고도 산업사회의 교육과정 및 평가, 서울: 교육과학사, 1991, 36면.

가 되기 때문이다.

學習經驗의 선정은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배워야 할 교육내용을 선정하는 작업으로서 일반적으로 교육목표와의 一貫性·信賴性·妥當性이 있는 내용이 선정되어야 한다. 학습경험의 조직은 선정된 교육내용을 학습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서 繼續性·系列性·統合性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학습 결과에 대한 評價는 교육과정 구성 요소 각각에 대한 평가와 학업성취에 대한 평가가 있다⁴⁷⁾.

Tyler의 모형은 매우 논리적이어서 교육과정 구성에 필요한 여러 요소들을 잘 분석하여 그 하나하나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규명은 하였으나, 그 여러 개의 요소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이루면서 존재하고 있는지 相關의이고 生態的인 면에서 분석하는 데는 부적절하다. 또한, 교육목표는 사회나 학습자, 그리고 교과내용을 분석한 것을 기초로 하여 설정하기 보다는 '教育現實自體(existing educational situation)'에서 추출되어야 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 Dewey는 '具體的인 教育現實(concrete educational experience)' 이야기로 모든 교육에 관계되는 연구의 일차적인 자료가 된다고 말하고 있다. 교육과정의 목표가 일차적인 자료인 교육현실에 근거해서 설정되지 않고 社會學이나 心理學 또는 哲學的 理論에 기초했을 때, 그 이론은 교육현실과는 관계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다⁴⁸⁾.

Tyler의 모형은 法教育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본모형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모형은 Tyler 모형의 결점과 비판을 보완할 수 있고,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특수한 상황과 절차를 고려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법교육 프로그램은 사회과의 法關聯 内容을 보완하여, 학생의 올바른 法意識을 형성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가지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의 국가적, 사회적인 현실을 파악하여 그 實態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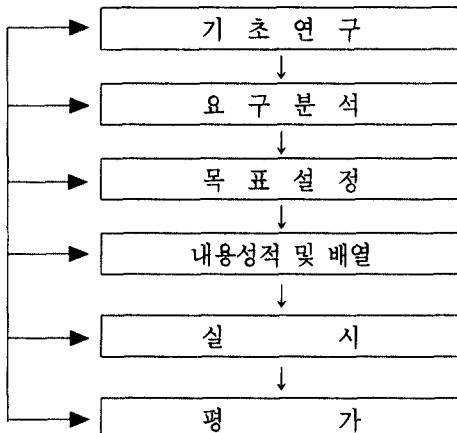
47) 김미숙, 사회복지기관에서의 자원봉사자 교육프로그램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1989, 17-18면.

48) 이해명, 전계서, 41-42면.

반영하여야 하고 초·중등학생의 법의식이 어느 수준에 있는가를 조사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법의식이 형성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내용을 구성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發達狀態*에 맞는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여 현재 단계보다 상위의 단계로 발달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므로 학습자의 발달특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법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先行法教育* 프로그램을 고찰하여 새로운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여야 하며, 법교육의 *實態*를 *分析*하여 현행 법교육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법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國家的·社會的*要求 및 *教育的*要求를 분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실태 분석 및 요구분석을 토대로 하여 법교육 프로그램의 *目標*를 설정하고, 목표에 따라 내용을 선정하고 배열하며, 이를 실시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방법을 나타내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위의 과정을 도표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모형



이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모형은 Tyler의 모형을 기본으로 하여 법교육에 대한 *基礎研究* 단계와 교육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要求分析* 단계를 부가

한 것이다. 기초연구 단계에는 선행 법교육 프로그램 고찰과 각급학교 교과서의 법관련 내용분석이 포함되고, 요구분석 단계에는 법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요구분석과 교육적 요구분석이 포함된다.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의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다 완전한 프로그램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단계별 循環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였다.

본 논문은 법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프로그램 개발의 모든 단계에 대한 연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음 절에서는 기초연구 단계에서 필요한 선행 법교육 프로그램을 먼저 살펴본 후, 목표설정, 내용선정 및 배열, 실시방법, 평가방법에 대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IV. 法教育 프로그램의 開發 方案

1. 先行 法教育 프로그램 考察

우리 나라에서는 초·중등 수준에서 개발된 法教育 프로그램이 없으므로 미국의 법교육 프로그램을 고찰하기로 한다. 미국에서는 초·중등학생의 법교육을 위하여 주 단위, 군 단위, 학교 단위로 개발된 법교육 프로그램이 무수히 많으나, 그 중에서 몇 가지 법교육 프로그램 및 법교육 보충자료의 目的과 內容構成에 대해 고찰하기로 한다. 미국의 법교육 프로그램을 고찰함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법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1) TIPS: Crime Resistance Strategies, K-8. Teaching Individuals Protective Strategies, Teaching Individuals Positive Solutions.

Virginia주 Charlottesville City와 Albemarle County School Systems의 교사단체에 의하여 1979년에 개발된 유치원에서 8학년까지의 법교육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어린이들의 肯定的인 態度와 행동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며, 어린이들이 그들의 權利를 이해하고 자신과 타인의 安全과 福祉의 보장을 돋는 책임을 깨닫게 하는데 있다. 1학년에서 5학년까지의 프로그램은 각각 3부로構成되어 있다. 1부는 '자기와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 단원으로서 어린이들은 感情(Feelings)⁴⁹⁾, 責任(Responsibility)⁵⁰⁾, 紛爭(Conflict)⁵¹⁾, 태도(Attitudes)⁵²⁾, 가치(Values)⁵³⁾에 대하여 배운다. 2부는 '사회에 대한 이해' 단원으로 規則(Rules)⁵⁴⁾, 權威(Authority)⁵⁵⁾, 법(Laws)⁵⁶⁾의 개념을 다루고 있으

-
- 49) 감정(feeling)이라는 개념은 유치원-2학년 프로그램의 단원명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어떤 사람 혹은 사물에 대한 태도 혹은 정서'라고 정의하고 있다(grade 1, p.46). 이것은 법개념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사람들의 감정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grade 1, p.1), 자신의 감정을 타인의 감정과 비교할 수 있게 함으로써(grade 2, p.1), 분쟁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 50) 유치원-5학년 프로그램의 단원명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직업을 수행하거나, 해야 할 일을 하는 것'(grade 2, p.49)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의무'라는 법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51) 유치원-6학년 프로그램의 단원명으로 사용되는 법개념으로, '자기 자신 또는 타인과의 사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서, 서로 반대되는 신념, 관심, 혹은 행동'으로 정의하며 (grade 3, p.57). 5학년까지는 1단원에서, 6학년은 3단원에서 다루고 있다.
- 52) 3학년-4학년 프로그램의 단원명으로 사용되는 법개념, '사람, 장소, 사물, 행동에 대한 감정'(grade 3, p.57)이다.
- 53) 3학년-5학년 프로그램의 단원명으로 사용되고 있다. '개인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이상 혹은 신념'(grade 5, p.49)이다.
- 54) 유치원-4학년 프로그램의 단원명으로 사용되고 있는 법개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를 말해주는 언어 또는 문서'(grade 2, p.49)를 말한다.
- 55) 유치원-6학년 프로그램의 단원명으로 사용되고 있는 법개념,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힘 또는 능력'(grade 4, p.51)이다.
- 56) 3학년-6학년 프로그램의 단원명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특별한 집단 혹은 지역사회 구성

며, 3부는 ‘안전과 범죄예방에 대한 이해’ 단원으로 保護戰略(Protective Strategies)⁵⁷⁾에 대하여 배우도록 구성되어 있다. 6학년은 4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 규칙, 법, 2부: 권리, 3부: 분쟁, 4부: 범죄이며, 각 부는 추천활동과 추후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2) Justice Education Teaching Strategies(JETS): K-6.

Pennsylvania주 교육성에서 1980년에 출간하였으며 편집자는 Murry Nelson이다. 유치원에서 6학년까지의 法教育 프로그램이며 시민적 자질 교육을 다루는 단계적인 법교육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목적과 구성방법은 앞에서 언급한 TIPS 프로그램과 동일하며, TIPS 프로그램에서 사용한 법개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각 개념을 가르치기 위한 제재도 대부분 TIPS 프로그램과 같다. TIPS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개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 Law: The Language of Liberty. Supplemental Materials for Alabama Social Studies Teachers. grades K-1, 2-3, 4, 5-6.

Alabama주 Administrative Office of Courts에서 1981년 10월에 발행한 법교육 보충자료이다. 이 자료의 목적은 알라바마주 사회과 교사들이 법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활동을 援助하고, 어린이들이 法과 법의 목적에 대해 존중심을 가지도록 하는데 있다. 도입부에서는 법교육 단원의 원리, 법관련 人士 초빙을 위한 안내, 법관련 인사의 교실방문을 돋기 위한 점검사항, 현장견학활동을 계획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⁵⁸⁾을 제공하고 있으며, 유치원-3학년은 1부: 規則, 2부: 가정에서의 規則, 3부: 학교에서의 規則, 4부: 놀이에서의 規則, 5부: 지역사회에서의 規則을 다루고 있으며, 4학년은 1부: 규칙, 2부: 지역사회와의 규칙, 3부: 법원제도, 4부:

원의 행위를 규제하는 일련의 규칙 또는 규정'(grade 5, p.49)이다.

57) 유치원-5학년 프로그램의 단원명으로 사용되고 있다.

58) Alabama Administrative Office of Courts, op. cit., pp.1-3.

민법과 형법, 5부: 인디안 법과 관습, 6부: Alabama주 최고재판소, 7부: Alabama주 사법제도로 구성되어 있고, 5-6학년은 1부: 법, 2부: 법과 책임, 3부: 법의 필요성, 4부: 자유와 정의, 5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 6부: 재판절차, 7부: 이웃 국가의 법과 관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프로그램의 말미에는 평가지가 붙어 있다.

4) Lesson Plans in Law-Related education

Utah주 교육위원회에서 1980년에 발행한 법교육 프로그램이다. 초등 학교 교사들이 讀解, 國語, 社會科 프로그램 속에 법교육과 도덕교육을 통합하는 것을 돋고, 어린이들에게 비판적 사고와 의사결정 기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돋는데 그 목적이 있다. 법교육에서 사용할 수 있는 教授戰略 (비판적 사고법, 브레인스토밍, 역할놀이와 시뮬레이션 게임, 토론법, 사례 연구법, 모의재판, 패널토의법, 자원인사 등)⁵⁹⁾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한 후 初級學年(Primary Grades: K-3)⁶⁰⁾과 中學年(Intermediate Ggades: 4-6)⁶¹⁾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다루고 있는 주제는 권리, 규칙, 권리와 책임, 절도, 보호법률(Protective Laws), 생산과 소비자주의, 광고와 소비자 조사, 도로안전과 보행안전, 법의 필요성, 법의 제정 절차, 법집행 공무원, 법원, 허가, Vandalism, 애완동물 소유와 사육법 등이다.

5) Law Related Education Curriculum

New Mexico주 Crownpoint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개발하여 미합중국 교육부에 제출한 중등학교용 법교육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에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효과적이고 가치있게 행동하도록 가르침으로써 훌륭한 시민적 자질과 법에 대한 존중심을 복돋우고, 법과 법체계에 대한 이

59) Utah State Office of Education, op. cit., pp.1-19.

60) Ibid., pp.21-61.

61) Ibid., pp.63-113.

해를 증진시키며, Navajo Reservation 구역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의 영역을 확인시키고 설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도입 부분에서 프로그램의 목표⁶²⁾와 교수전략⁶³⁾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으며, 제1부: 법의 소개, 제2부: 소비자법, 제3부: 私權, 제4부: 가족법, 제5부: 학생과 학교법, 제6부: 형법으로 구성되어 있다⁶⁴⁾.

2. 目標設定

법교육 프로그램은 새로운 教育課程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교육과정(주로 사회과)에서 미비된 점과 부족한 점을 보충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교육과정의 교과목표 및 학년목표가 법교육 프로그램에 適用되며, 그 외에 법교육으로 특별히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진술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교육 프로그램의 목표를 설정할 때에도 교육목표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가 있어야 하는데, 이에는 교육목표의 의의⁶⁵⁾ 및 기능⁶⁶⁾, 목표설정과 진술방법⁶⁷⁾ 등이 포함될 것이다.

62) Carey, John J., Law related Education Curriculum, Crownpoint Institute of Technology, NM., 1987, pp.1-2. ED 289 665.

63) Ibid., pp.3-7.

64) Ibid., pp.8-100.

65) 教育目標는 '학습과정 혹은 학습경험을 통하여 학생에게서 이루고자 하는 행동변화를 칭하는 것'(Smith, F. M. and S. Adams, Educational Measurement for the Classroom Teacher,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66, p.23)이며 또한 '教育에 의하여 학생들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기대되는 그들의 思考, 感情, 行動의 변화과정을 분명하고 간결하게 서술한 것'(정범모, 교육과정, 서울: 중앙교육출판사, 1961, 245면)이다. 따라서 교육목표는 프로그램 구성요소의 하나로서 교수·학습이 지향해야 할 목적일 뿐만 아니라 평가도구의 제작과 사용을 위한 具體的 指針이 되는 구실을 한다.

66) 교육목표의 기능은 첫째, 到達點行動을 제시(목표의 명확화)하며, 둘째, 학습 범위를 明確化(내용선정의 준거)하고, 세째, 교육전개의 指針(방법결정의 준거)이 되고, 네째, 成就度評價의 基準이 되는 것 등이다. 이러한 목표의 기능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 이유는 첫째, 목표의 설정진술이 抽象的일 때, 둘째, 목표의 설정과 진술 과정에서 관계자의 충분한 참여가 없을 때, 셋째, 목표는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방법

사회과에서 적용이 가능한 목표진술의 기준과 형식을 제시하고 있는 학자로서 Remmers를 들 수 있다.

Remmers가 제시한 목표진술의 형식은 ① 학생에게서 기대되는 變化의 용어로, ② 학생에게서 관찰할 수 있는 변화의 용어로, ③ 명확한 용어로, ④ 단일한 목표로의 진술이다⁶⁸⁾. 그리고 이렇게 진술한 목표는 高等精神能力을 포괄하여야 하고 또 개인적·사회적 필요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법교육 프로그램의 목표는 기초연구 및 요구분석을 근거로 하여, 일반 목표, 세부영역별 목표, 단원목표, 주제별 목표로 구분하여 진술하여야 하고⁶⁹⁾, 각 목표는 지식 목표, 기능 목표, 가치 및 태도 목표로 나눌 수 있다.

만 모색할 때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교육목표의 설정진술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최석진 외, 사회과 사고력 신장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방안 탐색, 한국교육개발원, 1989, 112면).

- 67) 교육목표의 設定과 陳述에 있어서 일정한 방향과 절차를 제시하기는 힘들다. 다만 교육 목표 설정과 진술의 일정한 專門的 水準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반적 지침 혹은 기준을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목표는 학습경험의 결정과 지도에 명확한 시사를 줄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明瞭한 행동적 용어로 진술되어야 한다. 둘째, 교육목표는 넓은 행동특징의 변화를 충분히 포함할 수 있도록 包括的이어야 한다. 세째, 설정된 교육목표들 사이에 一貫性이 있어야 한다. 네째, 교육목표는 實現可能한 것이어야 한다(이영덕, 교육의 과정, 서울: 배영사, 1973, 149-151면).
- 68) Remmers, H. H. (ed.), A Practical Introduction to Measurement and Education,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65, pp. 186-187.
- 69) 선행 법교육 프로그램에서 고찰한 JETS의 목표진술을 보면, 일반목표는 1. 학생들의 긍정적인 태도와 행동을 유지하고 증진시킨다. 2. 학생들이 자신과 타인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도록 책임을 수행하고 권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grade 1, p. iv). 1부의 목표는 (1) 사람들의 감정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2) '책임있는' 사람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3) 분쟁을 야기시킬 수 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grade 1, p.1). '감정'단원 중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라는 주제의 목표는 '학생들이 사람, 장소, 상황에 대하여 가지는 서로 다른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grade 1, p.2)라고 되어 있다.

3. 内容選定 및 配列

1) 内容選定 方法

사회과의 내용은 경험·문제 중심으로 구성하는 방법과 사회과학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방법이 있다. 전자는 경험주의 교육관에 입각하여 학습자가 일상적인 경험 속에서 만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교육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며⁷⁰⁾, 후자는 사회과학의 성과나 학습을 1차적인 목표로 삼고, 사회과학의 개념, 법칙, 원리 혹은 방법을 체계적으로 학습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⁷¹⁾. 따라서 法教育 프로그램의 내용을 선정하는 방법도 經驗·問題中心의 實用主義的 입장을 따르는 방법과 사회과학으로서의 法學의 學問體系를 따르는 방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개발된 법교육 프로그램을 보면, 위의 어느 한 가지 방법만 따르지 않고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는데, 기초적인 법개념을 선정하고,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그 법개념을 점차 확대시키며, 이들을 나선형 교육과정의 형태로 반복하여 제시하고 있다⁷²⁾.

선정된 법개념은 프로그램이나 주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초등학교 수준에서 선정된 법개념을 보면 TIPS나 JETS에서는 감정, 태도, 가치, 책임, 분쟁, 규칙, 법, 권리, 법원, 재판, 안전, 범죄이고, Vermont주에서는 법의 필요성, 자유, 권리, 분쟁, 공정이다⁷³⁾. 초·중등 수준에 걸쳐서 선정된 법개념의 예를 들면 Wisconsin주에서는 사회계약, 법, 정의, 정당성, 권한 및 권리, 적정절차, 책임, 사생활의 자유, 재산권, 법적 체계, 자유, 윤리이고⁷⁴⁾, Portland주에서는 권리, 사생활의 자유, 다양성,

70) 신정현 외, 민주시민교육론, 서울: 탐구당, 1987, 137면.

71) 상계서, 142-143면.

72) JETS에서는 규칙→법의 순서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고, 규칙은 유치원에서 4학년까지, 법은 3학년에서 6학년까지 학습하도록 되어 있다.

73) Lengel, James G., et al., op. cit., pp. 7-8.

74) Wisconsin State Dept. of Public Instruction, Descriptors for Law-Related Education, 1979, pp. 10-11.

자유, 책임, 재산권, 정의, 참여이다⁷⁵⁾.

2) 内容配列 方法

법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을 배열하는 방법으로는 법교육 내용의 論理的構成에 따르는 방법과, 학습자의 인지발달 및 도덕성 발달에 따라 배열하는 방법 및 法律關係擴大에 따라 배열하는 방법이 있다.

① 法教育 内容의 論理的 構成에 따른 配列

법적 개념에 대한 학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려면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직접경험이나 관찰할 수 있는 것에서 자료활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는 학습자가 經驗하고 知覺하는 순서 및 탐구능력의 활용정도 등을 고려하는 것을 말하며 법교육의 학문적 내용인 法的 概念이나 原理를 효율적으로 습득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따라서 학교급별에 따른 법교육 프로그램의 내용배열은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社會機能的 요소를 강조하여 법교육 전반에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초적인 법개념을 포괄적으로 가르치고, 중고등학교에 이르러 개인과 사회가 당면한 법적 문제사태에 법의 기본원리를 응용하고 적용시킬 수 있는 探究指向의in, 현대사회의 문제 등을 심도있게 다루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⁷⁶⁾.

② 學習者의 認知發達 및 道德性 發達에 따른 配列

법관련 학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려면 학습자의 인지발달 및 도덕성 발달의 단계에 맞추어 그 내용을 선정하고 배열하여야 한다. 법은 사회규범 중 국가권력을 바탕으로 하여 국민들을 구속하며 당연히 지켜져야 할 규범이기 때문에 그 본질을 이해하는데는 形式的 操作의 사고에 의존하는 바가 커서 고등학교 이상의 학생에게 적합한 학습이라는 측면이 강하다.

75) Bruco, Donna Kay, et al., op. cit., pp.23-26.

76) 최인화, 법교육과정의 적정성 탐색, 박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1992, 24-25
면.

그렇지만 具體的 操作期에 해당하는 초·중학교 학생들도 젊은 민주시민으로서 법적 기능과 준법의식을 가져야 하므로 법에 관한 학습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法的 發達에 관한 개념이 초·중·고 학생들의 연령과 사회관계의 경험정도에 따라 달리 형성된다는一般的根據에 기반을 두어 법교육 내용의 배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⁷⁷⁾.

③ 法律關係擴大에 따른 配列

법교육의 내용을 배열함에 있어서는 학습자가 경험할 수 있고 관찰이 가능한 法律關係나 法的 體制에서부터 시작하여 추상적 사고의 전개를 필요로 하는 국가세계 차원의 법관련 쟁점이나 관계들을 분석·이해시켜 나감이 타당할 것이다.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에게 社會法이나 國際法의 주요쟁점이나 원리를 곧 바로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영역은 학습자에게는 너무나 생소하고 경험의 기회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습자의 사회생활관계나 법률관계의 확대에 따라, 법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은 처음에는 私的이고 개인본위적인 것에서 점차로 전문적이고 사회지향적인 법 개념 원리들로 배열되어 가야 할 것이며, 이러한 교육내용은 학년, 학교급 별의 상향에 따라 심화되고 반복되는 螺旋形의 개념발달 형태를 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법률관계의 확대에 따른 법교육 내용의 배열은 法의 基礎理論 및 憲法上에 보장된 개인의 기본적 인권과 의무의 내용을 학습시키고 난 뒤,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간의 사적 생활을 규율하는 私法中心의 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마지막으로 行政法, 刑法 등 개인과 국가공공단체와의 관계를 규율하는 공법 중심의 학습내용구성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⁷⁸⁾.

77) 상계논문, 25~26면.

78) 상계논문, 27~28면.

4. 프로그램의 實施

1) 效果的인 實施 條件

法教育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① 학생들 사이의 진정한 相互作用과 協同學習을 조장할 수 있는 교수전략 ② 事例研究 자료의 현명한 選定과 提示 ③ 충분한 교수의 量과 質 ④ 교실에서의 外部 資源人士 活用 ⑤ 학교 行政家의 활발한 參與 ⑥ 교사들을 위한 專門 同僚集團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⁷⁹⁾.

① 학생들 사이의 진정한 相互作用과 协同學習을 촉진할 수 있는 教授戰略

학생들 사이의 상호작용과 협동학습을 조장할 수 있는 교수전략은 법 교육과 책임있는 시민적 자질에 관한 市民的 參與機能과 肯定的인 態度의 빌달에 핵심이 있다⁸⁰⁾. 이러한 교수전략의 중요한 보기들은 小集團學習, 시뮬레이션, 역할놀이, 모의법정과 모의재판이며, 이 교수전략들은 집단작업을 구조화하고 상호의존의 補償에 공헌한다. 학생의 상호작용을 조장하는 또 다른 이상적 기회는 논쟁문제를 다룰 때 일어난다. 논쟁의 쟁점은 그 자체의 성질에 의하여 토의를 조장한다. 이러한 교수전략은 교실에서 地域社會 資源人士의 이용과 결합될 때 학생들에게 어른의 역할모델과 상호작용을 위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⁸¹⁾.

② 事例研究 資料의 현명한 選定과 提示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論爭에 대한 토의는 법교육 프로그램의 본

79) Arbetman, op. cit., pp.4-7; Bonar, Bruce D., et al., "Encouraging Law-Related Education at the Elementary Level", *The Social Studies*, July/August, 1989, p.152; Little and Haley, op. cit., p.3; Pereira, Carolyn, op. cit., p.4; Turner, Mary Jane, An Evaluation of Law-Related Education: Implications for Teaching, Social Science Education Consortium, Inc., 1984, pp.4-10. ED 247 164.

80) Slavin, Robert E., "Cooperative Learning",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1980, pp.315-342.

81) Arbetman, Lee, op. cit., p.6.

질적인 특징이며, 현실적이고 공정한 문제의 취급은 효과적인 법교육 프로그램의 본질적 구성요소이다⁸²⁾. 학생들에게 균형적인 司法制度에 관한 견해를 제공하는 것은 질서있고 예측할 수 있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신념을 조장하는데 주요목적이 있다. 우리의 法體系는 결점이 없거나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제시되어서는 안된다. 이와 반대로 사법제도의 실패한 사례만 제시된다면, 학생들이 법을 社會秩序와 正義를 유지하기 위한 확고한 도구로 보는 견해가 감소할 것 같다. 따라서 법에 대한 존중과 특수한 영역에서의 법의 적용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할 것이다⁸³⁾.

③ 충분한 教授의 量과 質

법교육 프로그램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훌륭한 교수의 실재를 제공하는 계속적인 경험을 학생들이 교실내에서 가질 것이 요구된다. 법교육의 教授에는 많은 양의 시간이 소비되어야 한다. 매주 혹은 격주로 가르치는 것이 지식을 증가시킬 수는 있으나 다른 行動을 변화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최소한, 적어도 한 학기의 教授나 혹은 1년간의 교육과정에 법교육의 내용과 전략을 조심스럽게 통합하여야 한다⁸⁴⁾.

④ 教室에서의 外部 資源人士의 活用

법제도 속에서 일하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은 프로그램에 信賴性과 現實性을 더하여 준다. 또 외부 자원인사는 훌륭한 역할모델을 제공하기 때문에 법에 대한 학생들의 肯定的 態度의 개발에 강한 영향력을 미친다. 교실에서 자원인사(예컨대, 변호사, 판사, 경찰관, 국회의원)들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은 법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興味의 增加, 교사와 학교에 대한 肯定的反應, 그리고 비행적인 동료들과의 어울림으로부터 정상적인 동료들과의 어울림으로 변하게 한다. 물론, 이러한 역할모델은 학생들이 구하고 있는 바람직한 행동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⁸⁵⁾.

82) Ibid., p.5.

83) Pereira, Carolyn, op. cit., p.4.

84) Turner, Mary Jane, op. cit., p.9.

⑤ 學校 行政家의 활발한 參與

학교에서 법교육을 성공적으로履行하는데 핵심이 되는 것은 행정, 특히 학교장에 의한 강력한 지원이다. 효과적인 법교육은 행정가가 교실에 자원인사를 제공하는데 활동적으로 참여하고, 現場實習을 도우며, 교사들이나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법교육에 대한 비판에 관심을 가지는 학교에서 가능하다. 지원적인 행정가는 법교육에 대한 동료들의 支援體制를 조직하고, 뛰어난 연구를 한 교사에게 보상을 주고, 교사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에게 법교육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정당화하는 것을 도와주며, 직원들이 법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중요한 학교 행정가가 법교육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반대한다면 價值있는 법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일은 어려워질 것이다⁸⁶⁾.

⑥ 教師들을 위한 專門 同僚集團의 支援

법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는 교사들의 지식과 기능에 달려 있다. 덧붙여서 교사와 그 동료들의 법교육에 대한 確固한 태도는 법교육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 교사들에게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의 개발은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직원개발활동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다⁸⁷⁾.

동료로부터의 지원은 같은 학교내에 있는 교사들의 집단에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개발될 수 있다. 같은 학교내에 두 사람 이상이 훈련받았다면, 協力學習計劃을 세울 수 있고, 자원인사방문과 현장학습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다른 교사들과 행정가들로부터 법교육을 더 지원받을 수 있다. 덧붙여서 법교육 프로그램에 安定性을 부여한다. 한 교사가 전근 가거나 은퇴하더라도 훈련된 다른 교사가 그 학교에 남아 있어서 법교육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⁸⁸⁾.

85) Pereira, Carolyn, op. cit., p.4.

86) Arbetman, Lee, op. cit., P.6.

87) Pereira, Carolyn, op. cit., p.4.

88) Turner, Mary Jane, op. cit., p.10.

2) 實施 方法(教授-學習方法)

법교육 프로그램은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 법교육에 적합한 학습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說明이나 講義의 방법으로 법교육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방법에 의한 교육으로는 어린이들에게 지식은 심어줄 수 있으나 태도나 기능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법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는 법교육에 관한 教授戰略을 잘 알고 있어야 하며 그것을 바르게 실시하여야 법교육 프로그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법교육 프로그램의 학습에 사용할 수 있는 학습방법은 매우 많으므로 學習對象者의 발달수준에 적합한 학습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초·중등학교 수준에서 실시할 수 있는 教授-學習 방법으로는 1) 역할놀이(Role-playing)와 모의놀이(Simulation) 2) 현장견학 3) 자원인사 초청 4) 구조화된 토의 5) 사례연구 6) 모의재판 7) 비판적 사고법 8)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9) 공개면담 10) 갈등상황 토의(Dilemma Discussions) 등이 있다⁸⁹⁾.

(1) 역할놀이(Role-playing)와 모의놀이(Simulation)

역할놀이와 모의놀이는 초·중등학생들이 法教育이나 價值教育을 수행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類似한 教授戰略이다. 이 둘의 차이점은 모의놀이는 항상 역할놀이를 포함하는데 반하여 역할놀이는 언제나 模擬狀況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두 가지의 교수방법은 다른 사람에 대한 理解를 증진시키고, 학생들이 여기에 참가함으로써 비판적 사고기능, 의사전달, 자기신뢰, 동료와의 단결심을 고취할 수 있다. 덧붙여서 학생들은 그들의 세계를 더욱 效果的으로 다룰 수 있고 자신의 생활에서 필요한 決定을 더 잘 내릴 수 있게 된다.

89) Utah State Office of Education, op. cit., pp.3-19; Burco et al., op. cit., pp.27-39.

역할놀이와 모의놀이는 학생들이 편안함을 느끼고 스스로 참여하도록 준비하고 연습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교사는 이 두 가지의 戰略을 여러 번 사용하여 익숙해지도록 하여야 하며 때로는 기꺼이 역할모델이 되어야 한다. 교사는 학생들을鼓舞시키고 각 활동에 대해 항상 철저하게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⁹⁰⁾.

(2) 현장견학

현장견학에 포함될 수 있는 장소는 法院, 法廷, 警察署, 消防署, 矯導所 등이다. 활기있고 통찰력있는 보고와 함께 주의깊은 준비는 현장견학의 교육적 가치를 보장해준다.

법원방문을 준비할 때는 판사의 비서와 미리 접촉하여야 한다. 비서는 裁判計劃에 대해 알려줄 것이므로 방문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를 결정할 수 있다. 또, 학생들의 訪問計劃을 판사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판사는 때때로 재판을 잠시 멈추고 학생들에게 그 재판의 어떤 요점에 대해 설명해 줄 수도 있고, 재판 전이나 재판 후에 학생들을 만나 이야기하거나 질문에 대답해 줄 것이다.

견학이 끝나고 학교로 돌아온 후에는 학생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게 한다⁹¹⁾.

(3) 자원인사 초청

지역사회의 자원인사는 법교육에 대한 새로운 情報와 資料, 그리고 經驗을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다. 법교육 프로그램에서 법을 집행하는데 관련되어 있어서 초청할 수 있는 사람으로는 판사, 변호사, 법원서기, 경찰관, 소방관 등이다. 地方辯護士協會는 학생들에게 광범위한 법관련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초청할 수 있는 가장 적

90) Utah State Office of Education, op. cit., p.6.

91) Alabama Administrative Office of Courts, op. cit., p.3.

합한 곳이다. 그 외에 초청할 수 있는 사람으로는 일정한 權威를 가진 사람으로서 학교장, 수위, 팀의 주장, 심판, 집배원, 간호원 등이다⁹²⁾.

(4) 구조화된 토의

이 기법들은 특수한 문제나 주제에 주의를 집중시키고, 더 많은 학생들이 한 가지 주제나 개념을 檢討하는데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의를 용이하게 한다.

① 連續 이야기 : 한 가지 이상의 法的 問題를 포함하고 있는 이야기를 선정한다. 그 이야기를 몇 부분으로 나눈다. 각 부분은 토의를 필요로 하거나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법적인 문제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한번에 한 부분만 들려준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進行되어가는 討議에 따라 결론을 검토하고 최종결론을 내린다.

② 循環討論 : 토의에 최대한 참가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제에 符號를 붙여서 토의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각각의 질문에 숫자나 문자를 붙이고 학생들에게 그에 부합하는 숫자나 문자를 配當한다. 특수한 숫자나 문자를 배당받은 학생은 그에 해당되는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가장 먼저 응답할 수 있다. 이 기법은 연속 이야기에서 잘 이용될 수 있다.

③ 討議紙 혹은 討議카드 : 한 가지 주제나 문제를 소개한다. 이야기, 슬라이드, 녹음 테이프 등으로 할 수도 있다. 학급을 3~4개의 집단으로 나눈다. 각 집단에 토의해야 할 특별한 문제가 적힌 카드나 종이를 나누어 준다. 그 문제들은 같아도 되고, 각 집단마다 그 문제나 상황의 한 가지 측면만을 다루게 할 수도 있다. 각 집단은 合意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각 집단의 보고와 함께 결론을 내리고, 의견이 다른 소수자가 토의할 시간을 준다. 될 수 있는 대로 학급전체의 합의를 얻도록 노력한다.

④ 進步的 聽取 : 이 활동은 토의를 향상시키고 듣기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고안되었다. 집단의 리더는 ‘惡魔의 辯護人(일부러 반대입장을 취

92) Ibid., p.1.

하는 사람)'에 해당되는 진술을 제시하고 대답을 요구한다.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입장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기만 하면 同意하거나 반대하거나 자유이다. 그 집단의 다른 구성원의 대답에 의해 토의는 계속된다. 그러나 말하기 전에 자기 앞사람이 말한 내용들을 모두 요약한 후에 자기의 답을 말해야 한다. 이런 방법으로 토의는 계속된다. 자진해서 말하거나 지명에 의해 대답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규모가 큰 학급에서는 분단으로 나누어 활동할 수도 있다⁹³⁾.

(5) 사례연구(Case Studies)

사례연구는 학생들이 진정한 문제를 파악하고,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지지하며, 그 결정의 결과를 평가할 수 있게 해준다⁹⁴⁾. 현재 미해결의 상태로 있는 문제를 사례로 선택하면 교실에서 성공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토의를 거친 후에 학생들의 의견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 불일치는 다른 부가적인 사례를 소개하거나 그 주제에 관하여 새로운 자료를 제시할 외부인사를 교실에 초대하는데 호의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⁹⁵⁾.

학생들이 다음에 제시하는 방법으로 사례를 분석하는데 고무된다면, 그들은, 법에는 확실한 것이 거의 없으며, 한 사람이 해답을 발견해내는 방법은 해답 그 자체 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① 사실들은 무엇인가? 먼저 그 사례의 사실들을 가능한한 명백하고 정확하게 재진술하도록 시도한다.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사실들과 그렇지 않은 사실들 사이의 차이점을 인식하는데 특히 중요하다.

② 문제는 무엇인가? 사례에 의하여 제시된 문제에 관하여 일반적인 진술을 하도록 한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는 약속을 지켰는가?'

93) Bruso, Donna Kay, et al., op. cit., pp.35-36.

94) Reynolds, Ernest, III, et al., (ed.), *Of Counsel to Classrooms: A Resource Guide to Assist Attorneys and Teachers in Law Focused Education*, 1984, p.141.

95) Lengel, James G., et al., op. cit., p.9.

'그녀는 자전거 수리비를 지불해야 하는가?' 만약 학생들이 그 사례를 신중하게 읽어서 야기된 문제를 '~인가 아닌가'로 간단하게 진술할 수 있다면, 그들은 연습을 통하여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③ 각각의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가? 사례에 관련된 사실들을 분석하고 그 문제를 정의하고 난 후에 각각의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가에 관하여 결정한다⁹⁶⁾.

(6) 모의재판

모의재판은 학생들에게 실제 혹은 만들어진 사례의 재판에 참가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모의재판은 재판절차에서의 직접적인 경험을 학생들이 얻을 수 있도록 한다. 학생들은 역할을 부여받고, 이미 학습한 정보를 적용하여, 모의 법정에서 문제를 해결한다. 모의재판은 평가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다⁹⁷⁾.

모의재판을 할 때는 민사 혹은 형사사건의 재판절차를 학생들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학생들이 법적 절차에 대하여 얼마간 이해한 후에 시행했을 때 가장 성공적일 수 있다. 최대한의 결과를 얻으려면, 준비하는 시간과 사후해설의 시간을 확보해두어야 한다. 민사 혹은 형사 재판의 재판정을 교실에 설치하고, 각 재판의 참가자와 재판절차를 비교하고 토의하는 것도 유용할 것이다⁹⁸⁾.

(7) 비판적 사고법(Critical Thinking Approach)

비판적 사고기능의 개발은 모든 교육의 중요한 목적이며, 법교육과 가치교육에 있어서는 특히 핵심적인 것이다. 정보를 평가하고, 그 정보에 입각하여 대답하고 결정을 내리는 능력은 비판적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이다⁹⁹⁾. 법교육 수업에서 강조되어야 할 비판적 사고기능은 다음과 같

96) Ibid. p.9.

97) Burco, Donna Kay, et al., op. cit., p.35.

98) Reynolds, Ernest, III, et al., (ed.), op. cit., p.143.

다100).

① 자료수집기능: 정보를 정의, 증명, 소재파악, 수합, 조작, 평가하는 기능. ② 지적 기능: 자료로부터 비교, 분류, 탐구, 종합, 추론하고 가설을 세우는 기능. ③ 문제해결기능: 대안과 결과를 고려하고, 민주적 원칙에 따라 의사를 결정하고 그 결정을 정당화하는 기능. ④ 개인 상호간의 기능: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상황을 보고, 자신의 신념, 가치, 감정 및 단점을 이해하며, 개인을 고정관념화하거나 임의적으로 분류함이 없이 일반화하고, 집단 속에서 효과적으로 연구하고, 능동적으로 청취하며, 건설적인 비판을 주고 받고, 책임감을 수용하고, 다른 사람들의 권리와 재산을 존중하고, 설득하고, 타협하고, 협상하는 기능.

(8)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브레인스토밍은 問題解決技法이다. 이 기법은 주제에 관한 상상력과 창의성을 고취시키고 많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게 한다. 제출된 아이디어들은 문제에 대한 대안적인 해결책, 또는 문제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의 토의에 사용될 수 있다.

교사나 학생은 해결을 요하는 문제를 제시한다. 학급은 다음 규칙을 사용하여 가능한 한 대안이 되는 해결책을 많이 제안한다.

① 브레인스토밍 동안에는 아이디어에 대한 評價나 討議를 해서는 안 된다. 아이디어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아이디어의 제안을 제한하는 경향을 가진다.

② 아무리 터무니없이 보이는 아이디어라도 提案하도록 고무한다. 적절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것 보다 엉뚱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기가 더 쉽다.

③ 참가자들에게 가능한 한 많은 아이디어를 생각하도록 鼓舞시킨다. 아이디어가 빨리 떠오를 때, 학생들은 넓은 범위에 걸쳐 상상하고 그 결

99) Utah State Office of Education, op. cit., p.3.

100) Hawaii State Dept. of Education, LRE Ideas and Lessons on Citizenship/Law-Related Education, 1985, p.2.

과로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

④ 처음의 브레인스토밍이 끝난 후 참가자들에게 다른 사람의 제안을補強하고 修正하도록 고무한다. 흔히 아이디어를 결합하고 수정함으로써 더 우수한 해결책을 가져올 수 있다¹⁰¹⁾.

(9) 공개면담

이 활동은 교실 한가운데에 무대를 마련하고 학생에게 한 가지 주제에 관하여 자기의 입장 혹은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학생은 자기 자신, 혹은 주어진 역할 담당자로서 面談에 응할 수 있다.

이 활동은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교사나 학생들이 토의나 상황 도중에 좀 더 자세히 檢討하기를 원할 때, 교사는 그 주제에 관하여 누가 면담받기를 원하는지 지원자를 요청한다. 그 학생은 정직하게 대답하여야 하지만 답변을 거절할 수도 있다. 교사도 면담에 응할 수 있다.

공개 면담을 사용할 수 있는 또다른 방법은 역할놀이 상황을 꾸미는 것이다. 역할놀이에 따라 참가자들을 면담하고 일어난 일과 그들의 반응을관련시킨다¹⁰²⁾.

(10) 갈등상황 토의

갈등상황 토의는 학생들에게 갈등사태를 探究하여 해결방법을 형성하고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갈등상황은 두 가지 가치가 갈등을 일으키는 상황이며, 대개 두 가지 다 동등하게 마음에 듈다. 동등하게 바람직하거나 바람직하지 않는 代案으로부터 선택하는데 있어서 학생들은 그들의 가치를 분명히 하는 경험을 가진다.

갈등상황은 학생들이 학습하고 있는 내용영역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101) Bruco, Donna Kay, et al., op. cit., p.29.

102) Ibid., p.30.

갈등상황은 主題의 갈등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왜 그래야 하는가? 왜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하는가?’와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이 그 문제에 포함된 갈등을 더 잘 이해하도록 하면서, 그들의 대답에 대한 이유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¹⁰³⁾.

5. 評價

평가는 학습결과의 확인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計劃, 改善 및 正當性의 확인 등 다양한 기능을 갖는다. 法教育에 있어서도 평가는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과정으로 인정된다. 법교육 프로그램의 평가목적은 學習效果의 평가는 물론 프로그램 운영과 프로그램 자체의 개선을 위한 情報의 획득이라는 측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법교육 프로그램의 목표들이 평가 기준이 된다.

프로그램 평가는 평가의 實施時期에 따라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의 평가, 실시 직전의 준비도 평가, 실시과정에서의 평가, 종료시의 평가, 추수적 평가로 구분할 수 있고, 評價의 公式性 정도에 따라 形式的 評價와 非形式的 評價로 구분할 수도 있다. 형식적 평가는 측정도구에 의한 평가이고, 비형식적 평가는 교사나 행정가의 觀察, 對話, 設問紙 등으로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이다. 또한 측정된 자료를 판단하는 형태에 따라 相對的 評價와 絶對的 評價로 나누어진다. 상대적 평가는 주로 학생상호간이나 집단 상호간의 비교가 이루어지며 절대적 평가는 설정된 기준을 근거로 절대적으로 성취된 정도를 판단한다. 평가는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실시 전후의 모든 단계에서 수시로 실시되어야 하는데, 단위 학습시간에서도 준비도검사, 지도과정에서의 평가, 형성평가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평가의 유형, 시기 등이 정해지면 구체적인 평가의 절차가 확정되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問項分析, 資料蒐集, 資料分析과 解釋, 프로그램 修正의 단계로 고려되고 있다. 평가의 도구는 형식적 평가에서 測定에 사용하는

103) Ibid., p.39.

수단으로서, 도구의 적절성 여부에 따라 측정의 결과와 평가결과의 타당성이 결정된다. 따라서 타당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평가도구 자체가 妥當性, 信賴性, 客觀性, 實用性을 구비해야 한다. 이러한 요건들은 비형식적 평가에서도 요구됨은 물론이다. 평가실시자는 법교육 프로그램의 담당교사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監督廳, 外部 專門家 등 평가의 목적 및 정보 필요자에 따라 관련 인사가 융통성있게 관여할 것이 요구된다¹⁰⁴⁾.

V. 要約 및 結論

우리 나라의 法教育은 아직 활발하지 못하다. 더구나 그간 발표된 법교육 관련 논문은 대개 중등학교 수준에서 이루어졌으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어릴 때부터 體系的인 法教育을 실시하여야 장차 法的 思考와 法的 素養을 갖춘 民主市民으로 자랄 수 있을 것이라는 立場에서 초·중등학교의 法education 프로그램을 개발하는方案을 摸索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法教育의 의의와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법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고찰하였듯이, 민주시민의 바탕이 되는 自由, 人間의 尊嚴性, 責任感, 民主主義, 他人尊重 등에 관한 가치의 內面化라는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법교육이다. 법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은 市民的 資質의 향상, 법적 기능의 습득, 법의 분야를 둘러싸고 있는 社會科學의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법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基礎作業으로서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모형을 결정하였다.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모형은 널리 알려져 있는 Tyler의 教育프로그램(教育課程) 모형을 수정하여, 목표설정의 前段

104) 프로그램의 평가에 관해서는 홍기형 외, 부모교육 프로그램 모형 개발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84, 53-56면 참조.

階段에 基礎研究, 要求分析 段階를 추가하였다. 따라서 법교육 프로그램은 기초연구 → 요구분석 → 목표설정 → 내용선정 및 배열 → 실시 → 평가의 단계를 거쳐 개발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모형의 節次에 따른 기초연구로서 외국의 선행 법교육 프로그램을考察하였으며,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단계에서는 먼저 법교육 프로그램의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內容選定은 학습자의 經驗을 중심으로 選定하는 방법과 法學의 學問體系에 따라 선정하는 방법이 있고, 내용배열 방법으로는 법교육 내용의 論理的 構成에 따르는 방법과 학습자의 認知發達 및 道德性 發達에 따라 배열하는 방법, 法律關係擴大에 따라 배열하는 방법이 있었다.

다음에 법교육 프로그램의 실시 방법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효과적인 교수-학습의 조건으로서, 학생들 사이의 진정한 상호작용과 협동 학습을 조장할 수 있는 교수전략, 사례연구 자료의 현명한 선정과 제시, 충분한 교수의 量과 質, 교실에서의 외부 자원인사 활용, 학교 행정가의 활발한 참여, 교사들을 위한 전문 동료집단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밝혔다. 법교육에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으로서는 역할놀이와 모의놀이, 現場見學, 資源人士 招請, 구조화된 討議, 사례연구, 모의재판, 브레인스토밍, 公開面談, 비판적 사고법, 葛藤狀況 討議 등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法教育 프로그램 評價의 目的, 基準, 類型, 時期, 節次, 評價道具와 實施者에 대하여 고찰함으로써 적절한 평가방법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요컨대, 法教育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본 연구자가 제시한 것과 같은 법교육 프로그램이 각급학교 수준에서 다양하게 開發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단편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한 현행의 법교육으로는 법의식 향상과 民主市民的 資質의 育成이라는 법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체계적인 법교육 프로그램과 계속적인 법교육이 있어야 法意識이 올바르게 형성되고 그 결과로서 민주시민적 자질이 길러질 수 있을 것이다.